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817호
- 나. 발 의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9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고자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자 함.
- '스포츠데이'를 통해 생활체육 및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장이 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년 중 일부 날짜를 ‘스포츠데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에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스포츠데이’ 지정의 필요성

-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주 1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국민 10명 중 3명은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 6명은 걷기, 보디빌딩, 등산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걷기를 통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생활체육이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국민 스포츠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는 국민 대다수가 본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74.1% 긍정), 스포츠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71.2% 긍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국민의 절반 정도(47.2%)만이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 권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부는 2023년 12월 20일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운동 참여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스포츠 유인’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세부 과제로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주간 운영’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 >

-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 운영
 - (체육행사) 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 스포츠주간 체육행사 개최를 장려하고 민간의 특색있는 체육행사 발굴 및 확산
 - (캠페인) 국민이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행, 기간 내 개최되는 프로경기 관람료 할인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실 운영 추진

해당 세부 과제의 추진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고유한 특

성을 반영하여 스포츠주간 관련 행사 및 시설이용료 할인 등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정일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한다면 생활체육 미참여자를 체육활동에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스포츠 참여 권리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안 제22조의2)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2조의2(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동 개정안은 시장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스포츠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5조¹⁾에는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시민의 체육활동 신장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²⁾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각종 기념일 외의 기념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³⁾을 참고한다면,

서울시 역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는것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1)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3) 법제처 2018. 9. 20. 의견제시 18-0198 참조

여가선용에 관한 사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에 조례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어떤 특정한 날을 ‘스포츠데이’로 지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민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조례로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 따라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해당 날짜에 이용료·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정책적 수단이며, 이에 따른 시립체육시설의 세입 감소분은 시민 건강 복지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불가결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에 조례로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281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길영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 5. 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이유〉 ○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권장 및 육성 도모				
	〈주요 입법 요지〉 ○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 시장이 스포츠데이에 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추진경과	○ 2025. 5. 26. 조례안 발의(발의자 : 김길영 의원) - (찬성자)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송경택 의원 등 9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스포츠데이 지정·운영은 생활체육 및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환기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 안 제22조의2제2항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등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개정 후 감면 가능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장중석(☎2133-2677)	담당	방준흠(☎2133-2678)
	체육진흥과	팀장	함혜정(☎2133-2732)	담당	홍찬희(☎2133-2736)